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초1지역 김혜련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98호

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복지현장에서 직·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.

조례상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주요내용으로는
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
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,
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
위한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
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